



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

연간 근로소득

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(다만, 일용근로소득 제외)

※ 연간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「연봉」을 말함

(-) 비과세소득

- ▶ 실비변상적 급여
 - 자기차량운전보조금(월 20만원 이내), 연구보조비(월 20만원 이내),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
- ▶ 국외근로소득(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)
- ▶ 비과세 학자금, 근로장학금
- ▶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(연 240만원 이내)
- ▶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
- ▶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(월 10만원 이내)
- ▶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
- ▶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

(= 연간 근로소득 - 비과세소득) ※ 총급여액은 의료비, 연금계좌, 월세액 세액공제·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

| 총 급여액 | 공제액 (2,000만원 한도) | 공제액 (2,000만원 한도, 속산표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500만원 이하 | 총급여액의 70% | 총급여액의 70% |
| 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 | 350만원 + 500만원 초과액의 40% | 총급여액 × 40% + 150만원 |
| 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 | 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액의 15% | 총급여액 × 15% + 525만원 |
| 4,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| 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액의 5% | 총급여액 × 5% + 975만원 |
| 1억원 초과 | 1,475만원 + 1억원 초과액의 2% | 총급여액 × 2% + 1,275만원 |

(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) ※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·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

총급여액

(-) 근로소득공제

근로소득금액

(-) 인적공제

- ▶ 기본공제 : 근로자 본인,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)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(나이요건 충족 필요, 장애인인 나이제한 없음)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

| 부양가족 | 직계존속 | 직계비속 | 형제자매 | 위탁아동 | 수급자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나이요건 | 60세 이상 (*61.12.31.이전) | 20세 이하 (*01.01.01.이후) | 20세 이하 60세 이상 |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| 제한없음 |

- ▶ 추가공제 :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

| 요건 | 경로우대(70세 이상) (*51.12.31.이전) | 장애인 | 부녀자(부양/기혼) | 한부모*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공제금액 | 100만원 | 200만원 | 50만원 | 100만원 |

*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(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)

- ▶ 공적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,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)의 근로자 부담금 : 전액 공제

▶ 보험료

· 국민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전액 공제

▶ 주택자금공제

-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% 공제 :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: 연 300만원~1,800만원 한도
- *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(2014.12.31.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)

| 상환기간 15년 이상 | | | 상환기간 10년 이상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|
|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|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| 기타 |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| |
| 1,800만원 | 1,500만원 | 500만원 | 300만원 | |

(-) 연금보험료공제

(-) 특별소득공제

(-) 그 밖의 소득공제

- ▶ 개인연금저축 : 2000.12.31.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% 공제(연 72만원 한도)
- ▶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: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(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, 1억원 이하 300만원,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)
- ▶ 주택마련저축공제 : 청약저축·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 공제
- ▶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: 출자·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%(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%, 5천만원 이하 70%, 5천만원 초과 30%) 공제(종합소득금액의 50% 한도로 하며, 벤처기업투자신��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- ▶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: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의 15%~40%를 소득공제
 - *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: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%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%
 - * 공제한도 : 총급여액의 20%와 300만원(총급여 7천만원~1억 2천만원 해당자 250만원,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) 중 적은 금액. 다만,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,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(각각 100만원 한도)

p.66

p.104

p.105

p.112

p.114

p.130

과세표준

(x) 기본세율

- ▶ **우리사주조합출연금** :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(연 400만원 한도, 벤처기업 연 1,500만원 한도)
- ▶ **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** :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%를 소득공제(연 1,000만원 한도)
- ▶ **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** :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% 소득공제(연 240만원 한도)

(= 근로소득금액 - 인적공제 - 연금보험료공제 - 특별소득공제 - 그 밖의 소득공제 +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)

*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: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

| 과세표준 | 기본세율 | 기본세율(속산표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,200만원 이하 | 과세표준의 6% | 과세표준 × 6% |
| 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| 72만원 + (1,200만원 초과금액의 15%) | (과세표준 × 15%) - 108만원 |
| 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 582만원 + (4,600만원 초과금액의 24%) | (과세표준 × 24%) - 522만원 |
| 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1,590만원 + (8,800만원 초과금액의 35%) | (과세표준 × 35%) - 1,490만원 |
|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3,760만원 + (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%) | (과세표준 × 38%) - 1,940만원 |
|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9,460만원 + (3억원 초과금액의 40%) | (과세표준 × 40%) - 2,540만원 |
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17,460만원 + (5억원 초과금액의 42%) | (과세표준 × 42%) - 3,540만원 |
| 10억원 초과 | 38,460만원 + (10억원 초과금액의 45%) | (과세표준 × 45%) - 6,540만원 |

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

산출세액

(-)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

- ▶ **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** : 15세~34세 이하 청년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(청년 5년간) 근로소득세 70%(청년 90%, 150만원 한도) 감면

- ▶ **근로소득세액공제** :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%, 초과분 30% 공제(74만원, 66만원, 50만원 한도)

- ▶ **자녀세액공제** : 기본공제대상(7세 이상) 자녀 1명 15만원, 2명 30만원, 3명 이상(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) 출생·입양 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이상 70만원

- ▶ **연금계좌세액공제** : 퇴직연금·연금저축 납입액의 12% 세액공제(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%)

- 50세 미만 : 연 700만원 한도(연금저축은 400만원,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)
- 50세 이상 : 연 900만원 한도(연금저축은 600만원,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)
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(세액공제 대상금액, 300만원 한도)의 12%(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%) 추가 세액공제

- ▶ **특별세액공제**

- **보험료 세액공제(세액공제율 : 12%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%)**

-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: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
-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: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

- **의료비 세액공제(세액공제율 : 15%, 난임시술비는 20%)**

- 기본공제대상자(소득·나이 제한 없음)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 :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. 다만, 본인, 65세 이상자, 장애인,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,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
- ※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: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

- **교육비 세액공제(세액공제율 : 15%)**

-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·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: 전액 공제대상
-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(나이 제한 없음)를 위해 교육기관(대학원 제외) 등에 지출한 교육비 : 취학전 아동 및 초·중·고생 1명당 연 300만원,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
-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(소득 제한 없음, 직계존속 포함)의 재학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: 전액 공제대상

- **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**

| 기부금 종류 | 소득공제 ·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| 세액공제율 | | 이월공제 |
|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| 10만원 이하 | 100/110 | |
| ① 정치자금기부금 (조특법 제76조) | 근로소득금액 × 100% | 10만원 초과 | 15%(3천만원 초과분 25%) | - |
| ②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(법정기부금) | (근로소득금액 - ①) × 100% | | | 10년 |
|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(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) | 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) × 30% | | | - |
| ④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(자정기부금)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| [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] × 10% + [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의 20%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* 중 적은 금액] * 당해+이월 연도 종교단체 외 자정기부금 | | | 10년 |
| ⑤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(자정기부금)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| 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30% | | | |

* 자정기부금(종교단체 및 비종교단체 포함)은 근로소득금액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- ▶ **표준세액공제** : 특별소득공제·특별세액공제·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
- ▶ **납세조합공제** :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%를 세액공제
- ▶ **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** : ('95.11.1.~'97.12.31. 취득)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% 세액공제
- ▶ **외국납부세액공제** :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
- ▶ **월세액 세액공제** :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(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)가 지급한 월세액 (연 750만원 한도)의 10%·12% 세액공제

(= 산출세액 - 세액감면·세액공제)

- ▶ **주(현)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(전)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**

(=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) ※ 결정세액 > 기납부세액 : 차액을 납부, 결정세액 < 기납부세액 : 차액을 환급

결정세액

(-) 기납부세액

차감징수세액



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요건표

| 구 분 | 공 제 요 건 | | |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나이요건* | 소득요건* | 동거요건 | | |
| | | | 주민등록동거 | 일시퇴거 허용 | |
| 기본공제 | 본인 | × | × | × | |
| | 배우자 | × | ○ | × | |
| | 직계존속 | 60세 이상 | ○ | △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 | 1961.12.31. 이전 |
| | 직계비속, 동거입양자 | 20세 이하 | ○ | × | 2001. 1. 1. 이후 |
| |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| × | ○ | × | |
| | 형제자매 | 60세 이상 20세 이하 | ○ | ○ | 1961.12.31. 이전 2001. 1. 1. 이후 |
|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| × | ○ | ○ | |
| | 위탁아동 | | ○ | | |
| 추가공제 | 장애인 |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| | | |
| | 경로우대 |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| | | 1951.12.31. 이전 |
| | 부녀자 |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(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) | | | |
| | 한부모 |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자 | | | |
| 연금보험료 공제 | |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| | | |

* 나이요건 :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 * 소득요건 :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

| 구 분 |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| |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| 비 고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
| | 나이요건 | 소득요건 | | | |
| 특별 소득공제 | 보험료 |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(건강·노인장기요양·고용보험료) | | | |
| | 주택자금공제 | - | - | ○ | 본인만 가능 |
| 그 밖의 소득공제 | 개인연금저축 |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 | | | |
| | 주택마련저축 |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| | | |
| | 신용카드 등 | × | ○ | ○ | 형제자매 제외 |
| 자녀세액공제 (7세이상) | | ○ | ○ | - | 기본공제대상 자녀 (입양자·위탁아동 포함, 손자녀는 제외) |
| 연금계좌세액공제 | |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 | | | |
| 특별 세액공제 | 보장성보험료 | ○ | ○ | ○ | |
| | 의료비 | × | × | ○ | |
| | 교육비 | × | ○ | ○ | 직계존속 제외 *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, 직계존속도 가능 |
| | 기부금 | × | ○ | × | 기본공제대상자 * 정치자금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|
| 표준세액공제 | | 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 | | | |